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신영대·문금주·추미애

전재수・황 희・이성윤

김성화 • 민형배 • 박지원

윤준병 • 박희승 • 박정현

임오경 · 강선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2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3(주차질서 준수)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이하 이 조에서 "주차질서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의 주차 또는 통 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주차질서 위반으로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정해진 주차구획으로 주차하는 등 관리주체의 권고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에 필요한 교육,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

한 분쟁 예방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의3(주차질서 준수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
	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지정
	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
	(이하 이 조에서 "주차질서 위
	반"이라 한다)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
	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에
	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
	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
	등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을 준
	수하여 주차를 하도록 권고하
	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u>것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주차질서 위반으로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정해진 주차구획으
	로 주차하는 등 관리주체의 권
	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권

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입주 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 한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 에 필요한 교육, 주차질서 위반 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